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460

발의연월일: 2024. 8. 1.

발 의 자:김태년·조인철·민병덕

최기상 · 정성호 · 임광현

조계원 · 정준호 · 권칠승

김영진 · 이학영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,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 등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에 산업단지의 관리, 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·운영, 입주기업체 지원,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여러 글로벌기업들이 전력의 100%를 태양에너지, 풍력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'RE100'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으며, 국내 기업들에게도 그이행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국내 기업들의 신·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저조한 상황임.

이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에 산업단지 내 신·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다수의 기업, 연구소, 대학이 집적 해있는 산업단지에서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활성화하고 나아 가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45조의21제1항제11호 의4 신설). 법률 제 호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5조의21제1항에 제1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의4. 산업단지 내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신·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에 관한 사업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45조의21(사업) ① 공단은 제45	제45조의21(사업) ①		
조의17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			
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			
을 한다.			
1. ~ 11의3. (생 략)	1. ~ 11의3. (현행과 같음)		
<u> <신 설></u>	11의4. 산업단지 내 「신에너지		
	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		
	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3호에		
	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보		
	급에 관한 사업		
12. (생 략)	12. (현행과 같음)		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		